

光州廣域市西區體育振興協議會組織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
審 查 報 告

1996年 5月
企劃總務委員會

1. 審査經過

- 가. 提案日字 : 1996年 4月29日 光州廣域市 西區廳長 提出
및提案者
- 나. 回附日字 : 1996年 4月 29日
- 다. 上程日字 : 第55回 西區議會(臨時會) 會期中
第1次 企劃總務委員會(1996年 5月 7日 上程議決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文化弘報室長 李 學 範)

가. 提案 事由

-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광주광역시서구직제규칙의
개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개정

나. 主要骨子

- 제7조 제2항중 다음과 같이 한다.
"간사는 문화홍보실장이 되며, 서기는 문화체육계장이 된다."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朴 鍾 根)

- 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제2항중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라 "총무과장"을 "문화홍보실장"으로 하고 "의장이 지명한다"를 "문화체육계장이 된다"로 일부 개정 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임.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 략

5. 討論 要旨 : 생 략

6. 審査 結果 : 원안 가결

7. 少數 意見 要旨 : 없 음

8. 其他 事項 : 없 음

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중 “총무과장”을 “문화홍보실장”으로 하고,
“의장이 지명한다”를 “문화체육계장이 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 7 조 (간사등)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.</p> <p>② 간사는 <u>총무과장</u>이 되며, 서기는 <u>의장이</u> 지명한다.</p>	<p>제 7 조 (간사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. . . <u>문화홍보실장</u></p> <p><u>문화체육계장</u>이 된다.</p>